24. 12. 16. 오후 2:31 인쇄

예비군 전출입(직장)처리절차

예비군 편성

예비군 전출입(직장)처리절차

질병,심신장애 예비군 복무면제

지방청 담당 연락처

예비군 전출입(직장) 처리절차

| 사유 | 처리절차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전역 후 대학교에 입 학 또는 복학할 때 | 학생예비군에 편성되어야 예비군훈련 시간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, 대학직장예비군부대에서 편성, 대학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학교의 경우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거주지 지역예비군중대에 보류신고 필요 |
| 전역 후 직장에 취업 (복직)할 때 | -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 : 직장장이 직권으로 편성 -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직장 : 거주지 지역예비군중대에 편성 |
| 지역예비군이 거주지를 이동할때 | 예비군 대원은 거주지 이동시 작성한 주민등록 전입신고로서 예비군 대원신고를 한 것으로 봄. |
| 지역예비군에서 직 장(학교)예비군으로 편입할 때 | 직장(학교)장은 직장(학교)예비군에 편성하고 편성사실은 3일이내 직장(학교)소재지 지방병무 (지)청장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지역(학교)예비군 지휘관은 직장(학교)예비군에게 예비군편성카 드 송부 |
| 직장은 변동하지 않 고 거주지를 이동할 때 | 예비군 대원은 전입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읍·면·동장에게 주민등록 전입 신고 |
| 직장예비군에서 지 역예비군으로 편입 할 때 | 직장장은 직장예비군에서 편성 제외된 사실을 직장소재지 지방병무청에게 통보 및 예비군 편성 카드와 관련서류를 3일이내 주소지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송부 |
| 직장예비군이 퇴직 과 동시에 거주지를 이동할 때 | 예비군대원은 전입일로부터 14일이내에 신거주지 읍·면·동장에게 주민등록 전입 신고 |
| 직장예비군이 거주 지 이동없이 직장만 이동할 때 | 직장 장은 전출입 사실을 3일이내 직장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|
| 직장예비군이 직장 과 거주지 동시에 이동할 때 | 예비군대원은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읍·면·동장에게 주민등록 전입신고, 직장장은 전입사실을 3일이내 직장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|